

## 연금저축신탁 (채권형)제 (1호)약관 (구 서울은행)개정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</p> <p>① (생 략)  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③ "과세제외금액"이란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세액공제 ('13.12.31이전 납입 분은 소득공제를 말함. 이하 같음)를 받은 금액,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.</p> <p>④ "연금수령"이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후 연금 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3조제5항의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와 제 27조 제3항에 따른 인출을 말합니다.</p> <p>1. 거래처가 만55세 이후 인출할 것  2.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</p>	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"이연퇴직소득"이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(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)을 말합니다.</p> <p>③ "과세제외금액"이란 연금계좌 내 금액 중 <u>이연퇴직소득</u> 세액공제(<u>2013.12.31</u>이전 납입 분은 소득공제를 말함. 이하 같음)를 받은 금액,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.</p> <p>④ "연금수령"이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후 연금 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3조제5항의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와 제 27조 제3항에 따른 인출을 말합니다.</p> <p>1. 거래처가 만55세 이후 인출할 것  2.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 <u>(다만,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)</u></p>	<p>이하 항 체하  이연퇴직소득 용어 정의</p> <p>이연퇴직소득 문구 추가</p>
<p><b>제8조(신탁기간)</b>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 적립기간은 최소5년이상 거래처의 연령이 만55세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b>제8조(신탁기간)</b></p> <p>①(좌 동)</p> <p>② 적립기간은 최소5년이상 <u>(다만,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)</u>으로 거래처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<u>거래처의 신청에 따라</u> 연</p>	<p>이연퇴직소득 문구 추가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③ 연금지급기간은 제3조제3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합니다.</p> <p><b>제13조(연금지급)</b> ① 제3조 제3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날 이후 거래처가 은행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(연금수령개시일을 사전약정 하는 경우 포함)하면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하여 지급합니다.          ②~⑤(생략)          ⑥ 제5항의 계산식에서 "연금수령연차"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,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013년3월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: 6년차</li> <li>2.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: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</li> </ol> <p>⑦ 연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과세제외금액(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.)</li> </ol>	<p>금수령 개시 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연금지급기간은 제3조제4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합니다.</p> <p><b>제13조(연금지급)</b> ① 제3조 제4항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날 이후 거래처가 은행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(연금수령개시일을 사전약정 하는 경우 포함)하면 은행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하여 지급합니다.          ②~⑤(좌동)          ⑥ 제5항의 계산식에서 "연금수령연차"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,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2013.3.1.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(2013. 3. 1.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거래처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포함)</u>의 경우: 6년차</li> <li>2.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: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</li> </ol> <p>⑦ 연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과세제외금액(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.)</li> </ol>	<p>항변경</p> <p>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문구 추가</p> <p>문구추가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2. 과세대상금액(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말합니다)</p> <p><b>제23조(인출순서)</b></p> <p>①인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.</p> <p>1.과세제외금액(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) 2.과세대상금액(세액공제를 받은 금액,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)</p>	<p>2. 이연퇴직소득 3.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,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</p> <p><b>제23조(인출순서)</b></p> <p>①인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.</p> <p>1.과세제외금액(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말합니다) 2.이연퇴직소득 3.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,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</p>	<p>인출순서 추가</p> <p>문구추가</p> <p>인출순서 추가</p>
<p><b>제27조(세제혜택등)</b></p> <p>①생 략)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인출 순서에 따라 인출하며,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적용세율은 아래의 각호에 의합니다.</p> <p>1. 연금수령시 연령별 연금소득세 2.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</p>	<p><b>제27조(세제혜택등)</b></p> <p>①)생 략)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인출 순서에 따라 인출하며, 제13조 7항 2호 및 3호에 대한 적용세율은 아래의 각호에 의합니다.</p> <p>1. 연금수령시 연령별 연금소득세 (다만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%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결) 2.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(다만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</p>	<p>문구 구체화</p> <p>이연퇴직소득 명확화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36조(계좌이체)</b>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할 수 없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'13.3.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이 '13.3.1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로 계좌이체 되는 경우</li> <li>2. 퇴직연금계좌로 계좌이체 신청하는 경우</li> <li>3.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</li> <li>4.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⑤(생 략)</p> <p>⑥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기</p>	<p>(퇴직소득세로 과세)</p> <p><b>제36조(계좌이체)</b></p> <p>①~③ (생 략)</p> <p>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할 수 없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2013.3.1</u>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이 <u>2013.3.1</u>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로 계좌이체 되는 경우</li> <li>2. <u>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</li> <li>4.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</li> </ol> <p>⑤ 제4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3조 제1항 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(이하 "개인형퇴직연금계좌")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</li> <li>2. 제3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</li> </ol> <p>⑥(좌 동)</p>	<p>용어정비</p> <p>세법변경 반영 이하 항 체하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체신청 및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</li> <li>2. 이체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가입자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체 신청이 취소됩니다.</li> <li>3.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릅니다.</li> </ol> <p>⑦ 제6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(신탁금의 지급)에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(인감 또는 서명 포함)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-Pad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	<p>⑦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체신청 및 취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은행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</li> <li>2. 이체하는 은행의 전화녹취 또는 가입자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시 또는 미방문시 계좌이체 신청이 취소됩니다.</li> <li>3.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따릅니다.</li> </ol> <p>⑧ 제7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(신탁금의 지급)에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(인감 또는 서명 포함)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-Pad기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⑨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 다만,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한다.</p>	항신설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38조(관계법령 등의 준용)</b>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,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38조(관계법령 등의 준용)</b>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,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하며, 전자금융거래와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(시행일) 이 약관은 2016. 7. 4.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문구추가</p>